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4. 4. 29.>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

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가. 배우자	1.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표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 (상세)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문
나. 25세 미만인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부모	1.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가.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 (상세)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가. 법원의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표에서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라 한다. 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손자녀	1. 군인등의 자녀(신청인의 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조부모	1. 군인등의 부모(신청인의 자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가.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있는 25세 이상 인 자녀	나.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